

[별지 제51호의2서식]

국제예비심사는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. 둘 이상의 관할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선택해야 한다. 출원인은 아래에 해당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두 문자 코드를 적을 수 있다.

IPEA/ \_\_\_\_\_

# PCT

## 제2장

### 국제예비심사청구서

특허협력조약 제31조에 따라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국제출원인  
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되기를 청구합니다.

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

국제예비심사기관의 표시		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접수일
<b>제1기재단 국제출원의 표시</b>		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
국제출원번호	국제출원일 (일/ 월/ 년)	우선일 (최선일) (일/ 월/ 년)
발명의 명칭		
<b>제2기재단 출원인</b>		
성명(명칭) 및 주소 : (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. 법인의 경우,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.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.)		전화번호
		팩스번호
		출원인코드
<b>이메일 사용동의:</b> 본 체크박스에 표시함으로써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본 국제출원과 관련한 통지서의 선람용 사본을 송부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당해 기관이 본란 기재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이를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. (제2기재단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)		이메일 주소
국적 (국가명) :	거주국 (국가명) :	
성명(명칭) 및 주소 : (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. 법인의 경우,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.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.)		
국적 (국가명) :	거주국 (국가명) :	
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.		

용지 번호 .....

국제출원번호

**제2기재란의 계속 용지**  
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본 용지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

성명(명칭) 및 주소 : (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. 법인의 경우,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.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.)

국적 (국가명) :

거주국 (국가명) :

성명(명칭) 및 주소 : (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. 법인의 경우,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.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.)

국적 (국가명) :

거주국 (국가명) :

성명(명칭) 및 주소 : (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. 법인의 경우,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.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.)

국적 (국가명) :

거주국 (국가명) :

성명(명칭) 및 주소 : (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. 법인의 경우,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.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.)

국적 (국가명) :

거주국 (국가명) :

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.





## PCT

## 수수료 계산 용지

국제예비심사청구서 부속문서

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

국제출원번호	국제예비심사기관의 일부인
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	
출원인	
<p><b>소정의 수수료 계산</b></p> <p>1.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..... <input type="text"/> P</p> <p>2. 취급료 ..... <input type="text"/> H</p> <p>3. 소정의 수수료 P와 H에 기입된 금액을 더하여 총 금액을 기입한다. .... <input type="text"/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text"/> 총금액</p>	
<p><b>납부방법 등</b></p> <p>1.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106조의5 및 「실용신안법 시행규칙」 제17조에 따른 「수수료납부서」(별지 제47호서식)를 작성하여 제출하고, 해당 납부서 제출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*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상기 총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2.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(토요일·휴무일을 포함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후의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3. 우편으로 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*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에 따라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.</p>	